

2022년 달라지는 기업분야 주요 제도 · 시책

고용노동부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	(신설) • ‘21.1.8.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• ‘21.1.26.제정 • ‘22.1.27.시행	• 50인 이상 사업장 • (처벌범위) - 사망자 1명 이상 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- 사망 외 중대재해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• (의무사항) - 재해예방 인력·예산점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-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- 중앙행정기관 등 시정 명한 사항 이행 조치 - 안전·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	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‘22.1.27.)
			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(051-850-6483)
2022년 최저임금 인상	• 2021년 최저임금 : 시간급 8,720원 (주 40시간 기준 월 1,822,480원) • 최저임금 산입범위 : 상여금 15%, 복리후생비 3% 초과 금액(월환산액 기준)	• 2022년 최저임금 : 시간급 9,160원 (주 40시간 기준 월 1,914,440원) • 최저임금 산입범위 : 상여금 10%, 복리후생비 2% 초과 금액(월환산액 기준)	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(‘22.1.1.)
		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7970)
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	•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-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(‘20.1.1.~) -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(‘21.1.1.~)	•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-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 (‘22.1.1.~)	근로기준법 (‘22.1.1.)
			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044-202-7973)
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	•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-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(‘20.1.1.~) - 30인 이상 사업장(‘21.1.1.~)	•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- 1인 이상 사업장(‘22.1.1.~)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‘22.1.1.)
			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(044-202-7467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	• (지원기간) 12개월 지원 • (지원대상)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•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,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*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	• (지원기간) 6개월 지원 • (지원대상)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• (지원수준) 전 사업장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만원 *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	일자리안정자금사업 운영 규정 ('22.1.1.)
			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(044-202-7786)
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용 확대	• 부담 비용 - 50인 미만 사업장 : 기업 부담 비율 0%, 정부 지원 비율 100% - 50인 이상 사업장 : 기업 부담 비율 20%, 정부 지원 비율 80%	• 부담 비용 확대 - 30인 미만 사업장 : 기업 부담 비율 0%, 정부 지원 비율 100% - 30~49인 사업장 : 기업 부담 비율 20%, 정부 지원 비율 80% - 50~199인 사업장 : 기업 부담 비율 50%, 정부 지원 비율 50% - 200인 이상 사업장 : 100% 기업 부담	고용정책기본법, 고용보험법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('22.1.1)
			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(044-202-7455)

청년내일채움공제

(지원대상)

- 청년
 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 -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
 - 학력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 자는 제외(졸업예정자 가능)
- 기업 :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
(지원내용)

-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·지원 방식 구분

(신청방법)

- 워크넷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
- (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

(신청기한)

-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필수

※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 참고

※ 김해상공회의소는 '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이 아니므로 홈페이지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바람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신설	(신설)	•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기금화로 퇴직급여 지급 • 30인 이하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(최저임금 120% 미만)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% (3년 한시) 지원 •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 (수수료율 0.2%) 적용 예정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('22.4.14.)
		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044-202-7558)
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	(신설)	•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지원 -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- 최대 1년간 지원	('22.1월)
		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044-202-7344, 7448)
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	(신설)	• (대상)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• (내용)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• (지급)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~480만원, 1년 고용유지 시 360~960만원	('22.1.1.)
		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98)

□ 기획재정부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	• 중간예납 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- 30만원 미만	•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- 50만원 미만	소득세법 ('22.1.1.)
			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2)
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	•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• 미발급금액×20% -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·발급 시 가산세율 10% 적용	•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• 미발급금액×20% -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·발급 시 가산세율 10% 적용	소득세법, 법인세법 ('22.1.1.)
			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2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	•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- 30만원 미만	•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- 50만원 미만	부가가치세법 (‘22.1.1.)
			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044-215-4326)
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	•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- (요건) ‘20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‘21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	•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- (요건 정비)[①,② 모두 충족] ① ‘21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‘22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	조세특례제한법 (‘22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6)
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	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- (사후관리)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 기간 공제 배제 • (적용기한) ‘21.12.31.	•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-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• (적용기한) ‘24.12.31.	조세특례제한법 (‘22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6)
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	•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-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	•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-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	조세특례제한법 (‘22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6)
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•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- (지원내용)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% 세액공제 - (적용기한) ‘21.12.31.	•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지원내용) 15% 세액공제 - (적용기한) ‘24.12.31.까지	조세특례제한법 (‘22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6)
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	•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-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·법인세 환급	•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- ‘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2년(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) 으로 확대	조세특례제한법 (‘22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6)

□ 중소벤처기업부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여성기업 주간 신설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사업 근거 마련	(신설)	-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일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함 -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우수 여성경제인에 대한 포상, 홍보 등 기념행사 추진 예정	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(‘22.4.20.)
			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(044-204-7427)

□ 국세청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	(신설)	- 과태료 부과기준 -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: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-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: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*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	소득세법 시행령 (‘22.1.1.)
			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(044-204-4073, 4043)